

제 1 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사례 1

2018대구조정3·4·5 정정·반론·손배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지조치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보도하면서 유감표명을 포함하여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지방선거를 수 개월 앞두고 해당 지역 시장에 대한 ‘출마 예상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1면에 상세히 발표하고, 동일면에 별도 칼럼을 통해 후보자이자 전 시장인 신청인이 ‘지역시민들을 갈라놓고 파당을 지웠다’, ‘구태와 구습에 빠졌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하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여론조사는 보도 이전 이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보도 및 인용금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1면에 인용보도하였고, 근거 없는 비방을 통해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실확인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선거여론조사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년 ○월 ○일에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치를 받았으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지역선택 및 연령선택문항을 제외하고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실제 여론조사 내용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함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신청인의 재임시절 ○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으며,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시정을 폈다고 밝혀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조치 이유와 내용을 담아 정정 및 유감을 표명하고, 칼럼 내용에 대해 신청인의 입장을 추가로 반영하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조정대상보도1

○시장 선거는 현 시장과 전 시장의 맞대결, 그것도 리턴매치 구도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A시장과 B 전 시장은 두 번에 걸쳐 시장을 역임했고, 3선 도전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중략]

■ 현직시장 VS 전직시장

차기 ○시장 적합도 조사에서는 A시장이 한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C신문과 D방송사가 여론 조사회사인 E사에 의뢰, 지난달 22, 23일 ○시에 사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누가 ○시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A시장이 ○%의 지지율로 ○%에 머문 B전 시장을 제쳤다.

A 시장은 도의원 1,2선거구에서 모두 우세했다. 1선거구에서 46.8%, 2선거구에서 52.3%를 A시장은 도의원 1,2선거구에서 모두 우세했다. 1선거구에서 ○%, 2선거구에서 ○%를 기록했다. 반면 B 전 시장은 1,2선거구에서 각각 ○%, ○% 지지율을 거뒀다. [중략]

■ 용호상박 선거전

A시장은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업고 탄탄한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전문가답게 반칙 없고 기본에 충실한 리더십이 트레이드 마크다. 검증된 청렴성도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후략]

조정대상보도2

[전략] 한마디로 B 전 시장은 다시는 시장에 출마하면 안 된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다. 6년 했으면 됐지, 또 그 자리를 넘보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중략]

그런데도 B 전 시장 측은 뿌꾸기마냥 C당 지역위원회의 주요 당직에 자기들 사람으로 채워놓고, 남의 집에 살림을 차리고 있다. 전에도 이런 일을 하더니, 꼭 그때와 닮은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것이, 그 당의 힘을 빌려 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B 전 시장은 재임시절 정말, 어느 시장 때보다 시민을 갈라놓고, 파당을 지웠다. 같은 당이면서도 국회의원과 같등했고, 급기야는 국회의원에 출마해, ‘아~ 저 사람, 국회의원 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에게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권력욕만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중략]

구태와 구습에 빠져 일부 B 전 시장으로부터 물심으로 득을 보았던 사람들이 설치고 득실대는 세상을 씻어 내야 한다. 그들이 이번에 발호하면 차차기 ○시는 또 다시 그들의 리그로 떨어진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월 ○일자 ○면에 [] 제하의 기사에서 “C신문과 D방송사가 여론조사회사인 E사에 의뢰, ○시장 적합도에 대한 조사결과, A 시장이 ○%의 지지율로 ○%에 머문 B 전 시장을 제쳤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는 이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지역선택 문항(‘○○지역 외’)과 연령선택문항(‘만19세 미만’)을 제외하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시지역 외의 거주자와 19세 미만의 자가 응답하여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한 것에 대해 B 전 시장 측에 유감을 표합니다.

한편, 본 신문은 동일자 ○면에 []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B 전 시장이 재임시절 어느 시장 때보다 시민을 갈라놓고 파당을 지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 전 시장은 “재임시절 농민, 기업인, 근로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고 모든 시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시정을 폈으며, 그 결과 어느 시장 때보다 시의 인구가 증가하고(3년 연속 인구 증가),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하는 등 살기 좋은 ○을 만들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면 우측상단에 ○년 ○월 ○일까지 게재하여 발행한다. 단, 위 보도문 제목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 및 크기와 같게 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발행해온 통상적인 발간부수인 ○만부를 발행하고 피신청인이 배포해온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포한다.



사례 2

2018대구조정10·11, 12·13(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경찰서가 한 식당의 사업주에 대해 표적수사하면서 해당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A씨를 장애인 등록 및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준다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신청인이 관할 면사무소에 A씨의 병원비 등 후속조치를 해달라고 해 그 배경에 의혹이 있으며, A씨가 독방에 감금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A씨의 장애가 의심되어 친형을 찾아주었고, 친형의 동의 및 입회 하에 병원에 치료 및 입원 의뢰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니며, 면사무소에 후속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A씨의 퇴원 후 생활지원에 대한 상담이었다는 취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A씨의 장애가 의심되어 친형을 찾아주었고, 친형의 동의 하에 병원에 치료 및 입원 의뢰하였을 뿐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 ‘일반인을 정신병자로 만들었다’고 보도했으나 A씨는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면사무소에 병원비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퇴원 후 사후조치에 대한 상담을 한 것이었다
- 이 사안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표적수사’나 ‘갑질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왔다

조정결과

- 중재부에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해보더라도 A씨가 독방에 감금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정정하고, A씨를 입원시키는 데 전문의의 진단과 가족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입원’시켰다고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 나머지 내용에 대해 반론보도를 권유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경찰의 인권침해가 도를 넘었다. B경찰서에 근무하는 모 파출소장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내사와 표적수사를 했다는 경찰의 갑질 논란도 일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일하는 사업주가 노동력과 장애인의 정부보조금을 착취한 것으로 의심해 내사를 했다. 하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자, A씨를 장애인등록과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달 24일 모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병원 측과 한통속이 돼 A씨를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같은 사실은 가족의 폭로로 드러났다.

가족들은 경찰이 “좋은 혜택 받게 해준다는 말만 믿었지 정신병원인 줄 몰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입원한 C씨는 의사소통이나 일반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일반인을 정신병자로 만들면서 인권 침해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때문에 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정신병자로 취급,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C씨는 독방에 감금, 수면주사를 맞았는지 7일간 잠만 잔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한편, 관할 면사무소는 경찰이 L씨를 입원시킨 후 면사무소를 방문, 병원비 등 후속조치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털어놔 정신병원 강제입원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문

본보는 지난 ○월 ○일자 사회면 [] 제하의 기사에서 B경찰이 한 식당사업주의 종업원 C모씨에 대한 노동력 및 정부보조금 착취의혹에 대하여 내사하다 혐의가 없자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C씨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등 표적수사 및 ‘갑질’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경찰서는 “지난 1월 중순 ○면 소재 한 식당에서 장애인을 고용,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내사를 진행하던 중, 식당에서 일하던 C씨가 자신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장애가 의심되어 ○시에 거주하는 친형을 찾아주었고, 해당 정신 병원 전문의의 진료 후 C씨 친형의 동의 아래 입원결정된 것이므로, 경찰이 일반인을 강제로 정신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지는 경찰이 관할 면사무소를 방문, C씨의 병원비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C씨의 퇴원 후 기초생활 및 장애인지원비 등 사후조치에 대해 면사무소 담당자와 상담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지는 C씨가 이 병원에 입원한 후 독방에 감금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B경찰서는 본보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장애인 임금착취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표적수사’나 ‘갑질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면에 ○년 ○월 ○일까지 게재한다. 단, 위 보도문 제목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 및 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홈페이지 ○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3번째 이내)에 ○년 ○월 ○일 ○시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과 본문이 나타나게 한다. 24시간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게 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하단에도 위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사례 3****2018서울조정623 정정청구**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의 대처를 비판한 방송보도에 대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편성채널방송사인 피신청인은 모 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직 의사인 신청인이 내내 자리를 비웠다가 사망사건이 일어나기 4시간 전에서야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일 내내 병원 내에 머무르면서 응급실과 당직대기실을 오갔고, 병원 시스템상 신청인은 신생아응급실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구역 내에 상주하며 콜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면서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건 당일 오전 출근하여 회진하였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환자들을 계속 진료하였으며,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

조정결과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면을 통해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인터넷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중 '하루종일 자리를 비웠다'는 표현을 '두 차례 회진했다'는 취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지난달 A병원 신생아 ○명이 숨진 당일 중환자실을 책임진 당직 의사는 낮시간 내내 자리를 비웠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루종일 나타나지 않았다가 아이들이 숨지기 4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망 당일 한 신생아의 간호 기록입니다. 새벽부터 이상 현상이 시작됩니다. [중략]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당직 의사는 중환자실에 없었습니다. 당직 의사 B씨는 오후 5시에 처음



나타납니다. 저녁 6시에 처음 기관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합니다. 이상이 발생한 지 13시간 만에 처음 본격적인 조치가 시작된 겁니다. 7시 23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9시 32분 끝내 아이는 숨집니다.

경찰은 내일 당직 의사 B씨를 현장 의료진 가운데 마지막으로 불러들입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이들 상황에 대해 연락을 받았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방송은 지난 ○월 ○일 ○프로그램 [] 제하의 보도에서 “A병원 NICU 담당 의사인 B씨가 사건 당일 응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까지 자리를 비우고 ‘전화 처방’만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직 의사 B씨는 사건 당일 출근하여 오전과 오후 사망한 환자들을 회진하고 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가 하루종일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면 첫 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각 조정대상보도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사례 4****2018제주중재1·2 정정·손배청구**

추측성 보도에 대해 당사자간 화해를 바탕으로 정정 및 유감표명보도를 게재 하도록 중재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성애자임이 '강제 아우팅'되었다는 취지로 온라인 연례면에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강제 아우팅이 억울하다"는 등 마치 직접 동성애 취향을 고백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본인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곡 보도하여 성적 취향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은 해당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거나 동성연애자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법정에서도 동성연애자 라고 표기한 적이 없으므로 바로잡는다

중재결과

- 피신청인은 추측성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조정대상 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한 후 정정 및 유감보도 의사를 밝혔다. 신청인 또한 정정 및 유감 보도가 게재되면 금액배상은 양보할 의사를 밝혀함에 따라 중재 전환을 권유,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여 중재절차로 전환되었다.
- 중재부에서는 양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화해서를 토대로, 정정 및 유감보도를 명하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 중재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중재결정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월 ○일자 ○면에서 A씨가 강제 아웃팅당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씨는 한번도 본인을 동성연애자로 밝힌 적이 없고, 관련 인터뷰를 한 바도 없으며, 해당 사건 관련 소송절차에서도 동성애와 관련한 언급이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A씨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년 ○월 ○일까지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면 기사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 활자는 각 중재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여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게재 완료 이후에는 홈페이지에서 검색 시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네이버)에게 전송하여 검색 시 노출, 검색되도록 요청한다.



사례 5

2018제주조정15·16, 17·18(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지역내 공기업이 경영실적을 부풀렸다는 보도에 대해 일간신문의 1면과 2면에 정정보도를 이어서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제주관광공사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늘려 적자규모를 줄이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실적을 부풀렸다는 취지로 지면 및 온라인을 통해 비판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관련법 및 관계부처 각종 기준,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도되어 공기업으로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지방공기업 회계처리의 원칙에 따라 재산의 증감 및 변동(회계거래)을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린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게재지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재부는 1면에 제목과 내용의 일부만 게재하고 '2면 계속'이라고 표기한 후 2면에 나머지 내용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권유하였고,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조정대상보도1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판매·관리비용 일부를 누락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늘려 적자규모를 전년보다 20여억원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업의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분식회계 방식으로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하지만 제주관광공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판매·관리비에 포함돼야 할 항목인 보조금 인건비 20억원이 경상전출금수익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도보조금 인건비를 영업외 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중략]

제주관광공사가 이처럼 장부상으로 실제 경영실적보다 이익을 부풀려 계산한 것은 지난해 한반도 사드배치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줄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받은 인건비 20억원을 판매와 관리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경상전출금수익으로 잡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일반 기업하고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지역 한 경제전문가는 “시내면세점 이전에 따라 발생한 면세점 구축물처분 이익금 7억3900만 원도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나 영업외수익에 포함시켜 당기순이익을 크게 늘렸다. 기업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분식회계를 한 흔적이 곳곳에 있다”며 “감사를 통해 이같은 의혹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2

공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다르다. 물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기업도 하나의 기업인만큼 이윤을 도외시킬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공기업이 경영성과를 뺄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제주도가 출자해서 설립한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략]

하지만 제주관광공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와는 전혀 달랐다. 특히 판매·관리비에 포함돼야 할 항목인 보조금 가운데 직원 인건비로 20억원을 집행한 후 경상전출금수익으로 회계를 처리했다. [중략] 제주관광공사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및 결산지침에 따라 경상전출금수익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하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필수경비인 직원 인건비를 보조금인 경상전출금으로 끌어다 총당한다는게 말이 되나. [중략]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경영실적을 부풀린 것이다. 일반기업처럼 경영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한 흔적이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분식회계는 법으로도 금지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관광이 어려웠다는 걸 모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내는건 아니다. 이래서야 도민들이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어떻게 믿겠는가. 감사기관을 통해 의혹들이 속 시원히 풀렸으면 한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월 ○일자 [] 제하의 기사에서 제주관광공사가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분식회계 방식으로 적자규모를 줄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2면 계속)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판매·관리비용 일부 누락으로 순이익을 20억 원 늘렸다는 내용은 제주도의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또한 시내면세점 이전에 따라 발생한 면세점 구축물처분 이익금 7억 29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영업외수익으로 포함시켰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회계상 발생주의 관점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제주도로부터 2017년 급여 20억 원을 지원받아 영업손실이 감소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및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경상전출금 수익(영업외수익)/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의 기간 내에(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다음 항목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1면 우측 하단에 제목과 내용 일부(“○○일보는...〈중략〉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2면 계속)”를, 2면 좌측 하단에 나머지 내용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중략〉...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서브탑 목록에 통상의 기사목록 제목 크기의 고딕체로 위 보도문 제목을 컬러처리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보도문을 기사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검색 시 계속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보도가 검색되는 한, 원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보도문을 전송한다.



사례 6

2018경기조정71 손배청구

제보에 근거해 보도했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따라 정정·반론·사과보도 및 기사열람·검색 차단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지자체 교육청으로부터 가정형Wee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신청인 청소년재단이 직원과 학생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지원자들의 평가 순위를 변경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으로 4회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기사를 게재 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일방적인 제보에 의한 기사로서 종교행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단순히 종교 서적 비치로 인한 경고 처분이 있었을 뿐이며, 채용비리 또한 평가 순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면접 이후 서면평가 점수를 반영한 것 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은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청의 무혐의통지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정정하고, 종교행위와 관련해서는 반론을, 동시에 신청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사과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본보는 ○년 ○월 ○일자 [] 제목의 각 기사에서 교육청 위탁 시설인 A(Wee)센터를 운영하는 B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 센터에 머물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위해 재단 이사장이 면접 순위 ○위와 ○위의 순위를 바꿔 채용하라고 지시하고 관련 문서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으며,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재단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청이 ○년 ○월 ○자 무혐의 처분



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위 재단에서는 센터에 보호 중인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지는 위 보도로 인해 해당 재단과 소속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년 ○월 ○일자 ○면에 보도문을 2단에 걸쳐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2단 크기로, 본문활자는 통상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사회면에 ○년 ○월 ○일 ○시까지(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면 뉴스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나타내도록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 보도문이 나오도록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사회면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정대상보도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영구히 노출·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도 이 사건 기사가 더 이상 노출·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7

2018대전조정56 정정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 결과에 관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이전에 A지역합창단 노동조합이 신청한 조정사건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반론보도 요청 불성립’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A지역합창단 노동조합 노조의 반론보도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취하를 권유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 노동조합은 이전의 조정사건은 조정을 취하하는 대신 향후 신청인이 피신청인 측에 의견, 주장 등에 대한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경우 기사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 불성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마치 조정신청이 기각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언론중재위원회 확인결과 조정을 취하하고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 것이지만 ‘요청 불성립’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요청한 반론보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반론보도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항의 이후 인터넷 기사를 즉시 내리고 제목을 정정하는 ‘바로잡습니다’ 기사도 게재했다고 항변하였으나 중재부에서는 피신청인이 조정합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신문은 지난 ○월 ○일 ○면 [] 제하의 기사에서 A시립합창단이 본 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 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이 조정불성립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정사건에서 A시립합창단이 조정을 취하하는 대신 본 신문은 A시립합창단의 활동이나 의견, 주장 등의 기사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체의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활자체 및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활자체 및 크기로 게재한다.



사례 8

2018전북조정71·72 정정·손배청구

보조금 횡령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는 보도에 대해 무혐의처분 사실을 근거로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지역군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환대상자 중 보조금 유용 및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자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보도에 언급된 비정규직 직원으로, 해당 횡령 고발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탈락되고 재취업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의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사건 관련, 경찰 및 검찰에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최초 보도 이후 ‘보조금 유용 및 횡령’을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의혹’이라고 수정했다고 항변하였으나 중재부는 단정적인 표현을 ‘의혹’이라고 수정했다 하더라도 혐의 사실이 신빙성이 있지 않는 한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중재부는 신청인의 정규직 전환 탈락이 피신청인의 보도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양 측에 정정보도 게재로 합의를 권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A군이 군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논란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보조금 유용과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자를 채용한데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부적격자를 감싸고 도는 공직자들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규직 채용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B씨는 지난 27일 오전 A군청을 방문해 부서 과장과 부군수, 군수실을 기습 방문해 “부적격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한다면 그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력 항의했다. [중략]

이번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기존 직원 고용승계를 우선하라는 내용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 방식(서류와 면접)인 아닌 비공개 채용방식으로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A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지난 ○월 ○일자 ○면 [] 제목의 기사에서 “A군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보조금 유용과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자를 채용’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보조금 유용과 횡령 혐의를 받은 해당 직원은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면에 정정보도문을 5개월 이상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면의 첫 페이지 상단에 나타내도록 한다. 단,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보도가 계속 검색 또는 노출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단,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본문활자보다 3배 이상의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를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전재하여 조정대상보도가 계속 검색 또는 노출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조치한다. 단,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본문활자보다 3배 이상의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사례 9

2018서울조정1733 정정청구

부실 공사 의혹 보도에 대해 법원의 재판 내용을 근거로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화력발전소 배관건설 공사와 관련, 공사 당시 용접사로 근무한 A씨가 해당 공사가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LNG 가스배관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등 부실 의혹을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배관건설공사 시공사인 신청인 업체는 가스공사의 표준 시방을 준수하였고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마치 신청인 업체가 부실시공을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기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가스공사의 공사표준시방을 준수하였으며, 관계기관에 확인의뢰한 결과 설령 표준시방에 위반되게 작업하였더라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제보자가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중재부는 관련 재판 내용에서 언급된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A화력발전소 공급배관 건설공사' LNG가스배관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A화력발전소 공급배관 건설공사'의 안전성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한국가스공사가 시행사이며 시공사는 B건설이 주계약자이며 부계약자는 C업체다.



LNG가스배관 안전에 문제성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D씨는 공사당시 부계약자 C업체의 직원으로 안전 문제성을 제기한 구간에 용접사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민원인 D씨에 따르면 “LNG 배관 파이프 용접의 베벨각도가 시방서에는 30도~35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은 20도로 용접을 했다”며 “이는 용접 부위가 줄어들어 안전에 문제성이 있지만 30도로 용접을 하면 작업시간이 2시간이 소요 되는 반면 20도로 작업을 하면 40분이 소요 된다”고 전했다. [중략]

이에 C업체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과 경찰, 시의원, 포천시청과 함께 확인굴착을 해서 전문가들이 문제성이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것은 C업체에서는 그 누구도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문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원인 D씨는 “본인이 확인 굴착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확인 굴착에 참여한 적도 없고 확인 굴착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없다”고 말했다. [중략]

시청 조사팀 관계자는 “시청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여건상 어려워 한국가스공사에 의뢰한바 안전검사에 대한 기록이나 검사서 없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 확인굴착에 참여한 적도 없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보내준 회신으로 민원인에게 답변을 했다”고 해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월 ○일자 ○면 [] 제하의 기사에서 시공업체가 LNG 배관공사를 하면서 한국가스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르지 않고 부실 시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가스배관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D씨의 민원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공업체는 한국가스공사의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에서 용접절차서 부적합 시공 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설령 시공업체에서 표준시방에 위반되게 작업하였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사례 10

2018광주조정87,90(병합) 각 정정청구

폐간된 지역 신문의 정통성 계승에 대한 언론사 간 조정사건에서 정정 및 유감 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창간기념 특집면에서 회장의 기념사 및 사진 등을 통해 'A신문의 시대정신을 계승'하였으며, 강제 폐간 등 역경을 뚫고 재창간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타 언론사인 B신문사의 소속기자로서, A신문이 지방신문 통폐합 조치에 따라 B신문사로 통합되었으므로 A신문을 계승한 것은 신청인이 소속된 A신문사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A신문의 시대정신 계승, 강제 언론 통폐합 등 역경, 재창간 사실 등은 피신청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A신문을 계승한 것은 B신문사이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A신문을 계승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본연의 언론 시대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B신문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정정 및 유감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창간 29주년 기념사 “진실의 편에 서서 언론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와 한가족이 되면서 새출발을 선언한 A신문이 스물 아홉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도민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A신문은 [중략] ○년 창간된 옛 'B신문'의 시대정신을 계승하였기에, 군사정권의 강제 언론 통폐합으로 한동안 부침도 있었으나, 무려 60년 가까이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왔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1989년 지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부응하여 '진실의 편에 서고, 향토를 사랑하며, 문화를 꽃피운다'는 사시(社是)를 구현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세월이 스물 아홉 개의 성상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삼권분립과 비교되어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며, 저희 A신문이 걸어온 29년은 언론의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고자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이를 뒤 임기가 시작되는 제7기 지방정부의 출범 등을 감안하면 지금 이순간도 쉽없이 뛰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저희 A신문 임직원 모두는 유념하고 있습니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지난 ○월 ○일자 '창간 29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B신문이 '구 A신문을 계승'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 A신문의 불굴의, 본연의 언론 시대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덧붙여 '계엄군 검열 사진'은 구 A신문 출신이자 과거 사장으로 재임하셨던 고 ○○○ 사장께서 생전 사장 재임시 '언론탄압의 대표적 상징 중 하나'라며 직원들에게 '이런 기자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공개한 후 5·18재단에 기증한 것으로, 구 A신문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을 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A신문은 B신문 측이 구 A신문과 C신문의 통합에 따른 정통성 주장을 이해하며, B신문의 역사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 지면 ○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지면 판 조정대상 보도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이 한다.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번째 기사로 나타내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인터넷 판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인터넷 판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또한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위 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홈페이지 ○면과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 11

2018서울조정1882·1883, 1884·1885(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노동조합을 비판한 사설보도에 대해 정정 및 유감보도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중앙일간신문인 피신청인은 대법관 출신인 시법원의 전담판사가 첫 출근길에 노동조합 소속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는 등 봉변을 당했다며, 이를 ‘反법치 행패’ ‘그런 행패를 방관해선 안된다’는 등의 취지로 비판한 사설을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보도에 언급된 신청인 노동조합은 당시 해당 판사가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원들이 판사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보도에 언급된 판사는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고, 신청인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만나지도 못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이 신청취지대로 정정 및 유감보도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국 사법부 70년 역사에서 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시·군 법원의 ‘시골판사’를 자임한 A 지방법원 B지원 C시법원 소액사건 전담판사가 첫 출근길에 어이없게도 봉변했다. D노조, E노조 호남지방본부, F당 ○도당 등에 소속된 30여 명이 법원 정문에서 시위를 벌여 그의 출근을 훼방 놓았다. 대형 로펌 취업이나 개업을 마다하고 “대법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G판사의 선의(善意)마저 무참하게 짓밟은 반(反)법치 행패다.

시위대를 뚫고 G판사가 간신히 출근하는 과정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G판사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취임식도 취소가 불가피했다. G판사 면담을 거듭 요구한 시위대는 법원 민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G판사가 신변 위협을



우려해 오후 일정은 취소하고 조기 귀가했겠는가.

이들의 주장 또한 가당찮다. [중략] 경찰·검찰은 그런 행패를 방관해선 안 된다. 불법 행위 엄단으로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공권력의 책무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신문은 지난 ○월 ○일 자 ○면 [] 제하의 사설에서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G판사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취임식도 취소가 불가피했다. 판사 면담을 거듭 요구한 시위대는 법원 민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고, G판사와 H 해고노동자들이 아예 만나지도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허위사실을 근거로 논평한 것에 대해 해고 노동자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면 우측 하단에 기재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년 ○월 ○일자 ○면 [] 제하의 기사의 부제목의 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 대상보도의 본문 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면 초기화면에 통상의 방식으로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면 초기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2

2018경기조정184, 185(병합) 각 정정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인 피신청인은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보도에 언급된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파악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지체처의 지원금신청을 보조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소유자를 파악하고, 동의서를 받아 지자체에 신청서를 접수, 지원금을 지원받아 공사금액을 충당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공사 중 일부 사항이 위배되었다고 해서 ‘조작해서 꿀꺽’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나치고, 신청인이 제출한 지자체의 관련 공문을 확인해본 결과 신청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정보도를 권유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A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A시로부터 공사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월 B구 소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회) 측에 ‘공용배관 개량 사업 지원금’ 승인 대상이 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C 아파트 입주자회는 아파트 내 노후 배수·관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A시에 공용배관 공사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시가 이에 대한 ‘승낙’ 표시를 해준



셈이다.

시 승인을 받은 C 아파트 입주자회는 1일부터 6일까지 주민들에게 공사 동의서를 얻기 시작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및 공동주택이 배수·관 공사를 할 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해선 아파트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C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동의서에 찬성해 시 지원금의 기준이던 ‘80%’를 채웠다. 이어 같은 달 21일 C 아파트 입주자회는 해당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노후 배수·관 공사인 ‘급수·급탕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 공사가 끝난 지난 7월께 A시로부터 7억 9천만여 원의 지원금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실제 C 아파트 입주자회가 동의서를 받은 대상이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들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입주민 등 대리인이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위임장이 함께 첨부돼야 하지만 C 아파트 입주자회는 당초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를 얻지 않고 입주민에게만 동의서를 작성하게 해 위법을 저질렀다. 이때 수원시 역시 정확한 확인 없이 약 8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C 아파트 입주자회에 지원했다.

A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미처 몰랐던 부분으로, 즉시 C 아파트 입주자회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며 “이번 공용배관 개량 공사는 입주자회 대표가 총괄 관리감독해 온 만큼 공사와 관련된 민·형사상 모든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 아파트 입주자회 관계자는 “시로부터 공사 지원금을 타기 위해 입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보는 ○년 ○월 ○일자 [] 제목의 기사에서 A시 B구 소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 배수·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로부터 공사지원금을 타기 위해 소유자가 아닌



입주민 위주로 단 6일에 걸쳐 동의서를 받았고, 계획보다 공사 금액이 10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약 30년 된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1천992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파악하여 약 4개월 15일에 걸쳐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의 동의서를 받았기에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배관 교체 공사의 범위 및 금액은 변경되거나 증액되지 않고 최초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까지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면에 보도문을 2단에 걸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홈페이지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사회면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각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3**

2018경기조정221·222·223, 224·225·226(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사업 설명회에서 있었던 참석자들의 비판적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외에 기사수정이 이루어진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인 피신청인은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설명회에서 시민들과 시의원이 현실성이 낮은 황당한 사업이라는 등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인용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해당 태양광 사업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며, 당시 사업설명회에서 시민들과 시의원이 보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발언했다고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도 왜곡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사업인 것처럼 표기하였고, 사업수익성을 확보하도록 사전 설계되는 등 효율성에 문제가 없고, 시민과 시의원의 발언을 직접인용하였으나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당시 설명회가 종료한 이후에 시민들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정 결과 사업주체 및 인원, 관련 펀드의 판매대상 등에 대해서는 정정, 수익률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시민과 시의원의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서울시가 과천시 막계동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과천 시민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사업추진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2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9만여㎡ 규모의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과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과천시민회관 세미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과천시의회 시의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시민들은 태양광사업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며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가 태양광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사업개요와 피해대책 등 관련자료 한 장도 배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그맨을 사회자로 내세우는 등 과천시민을 우롱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시민 K씨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은 과천시민에 편드를 들게 해서 과천시민 돈으로 전기를 생산, 과천시민에게 팔겠다는 사업”이라며 “하지만 태양광 수익률은 5.6%로 시민펀드 수익구조와 수익률이 낮아 현실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태양광 사업을 반대했다.

L씨는 “과천시 중 개발제한구역은 중앙정부에서 빼앗아 제멋대로 개발하고, 서울대공원 주차장은 서울시가 탈 원전 정책 일환으로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해 과천시 도시미관 등을 해치고 있다”며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설치사업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금란 시의원은 “서울시는 사업설명회에서 태양광 패널에 납성분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빛 반사 피해도 크지 않다는 등 황당한 설명으로 일관했다”며 “사업성이 좋고,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과천시가 아닌 서울지역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라”고 서울시 행정을 비난했다.

이어 “서울시는 폐 패널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지 연구 중이라는 답변을 했고,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의 이익에 대해서는 펀드로 나누겠다는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서울대공원은 과천시 땅이며, 언젠가는 과천시로 이전돼야 하기 때문에 20년 기간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보는 ○년 ○월 ○일자 ○면 []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했고, 설명회에 과천시의회 시의원과 시민 등 200

여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사업에 관한 시민과 시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과천시민에 펀드를 들게 해서 과천시민 돈으로 전기를 생산, 과천시민에게 파는 사업’이고 ‘태양광 수익율이 낮아 현실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에너지공사가 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서 사업설명회도 서울에너지공사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설명회 참석인원은 1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민 공모펀드’는 관련법상 과천시민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생산된 전기는 규정된 공급의무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울에너지공사는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태양광 펀드의 전체수익률은 12.4%로 산출됐고, 시민 수익률은 연 4.1%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면에 2단에 걸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년 ○월 ○자 ○면 [] 제목의 기사의 제목활자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제목과 동일한 서체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홈페이지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보도문을 인터넷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홈페이지에서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중 시민 K씨의 발언 단락(“시민 K씨는~반대했다”)을 전체 삭제하고, 시의원의 발언 중 “황당한”, “비현실적” 단어를 삭제하며, 수정된 조정대상 보도의 본문 하단에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4

2018서울조정2361·2362 정정·반론청구

저작권 관련 분쟁을 다룬 보도에 대해 법원의 관련 판결 요지를 담은 정정보도 게재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업체가 타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국가 기록원을 통해 넘겨받아 복제했다고 2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 업체는 관련 소스코드는 국가기록원이 건네준 것으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타사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이 없으며, 타사와 신청인 업체의 소프트웨어 유사도는 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국가기록원이 피고보조참가를 한 것은 A사가 'B사가 승소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그같은 언질을 받은 적이 없고 절차상 보조참가한 것임
- 해당 소스코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
- 반론 : B사는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이 없고, 국가기록원이 특정 업체를 도운 적이 없으며, 이미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인증을 마친 상태였고, A사와 B사의 소프트웨어 유사성이 미미함

조정결과

- 신청인 업체는 해당 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판결문을 제출했고,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해당 판결문의 요지를 보도하도록 양 측에 권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조정대상보도1

국가기록원이 민간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설계도)를 경쟁업체에 통째로 넘긴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증보안전문업체 A사는 지난 2015년 12월 저작권위반혐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이던 B사와의 재판과정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듣게 됐다.

기록정보화사업을 추진 중인 국가기록원의 요청으로 납품한 대용량 기록물전송 솔루션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B사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중략]

A사는 이 제품을 2011년 공급하고 난 뒤 3년이 지나서야 B사 제품이 자신들의 제품을 복제한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D사가 국가기록원에 공급한 제품과 A사의 제품은 90%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D사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제품의 저작권은 국가기록원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주체는 D사가 아닌 국가기록원이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다.

국가기록원은 소송이 제기된 뒤 1년 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D사가 승소할 경우 자신들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A사가 언질을 넣었기 때문이었다. [후략]

조정대상보도2

지난 2007년 A사는 기록물전송 솔루션을 국가기록원에 납품한 뒤 2010년 국가기록원의 표준기술 규격 제정 사업을 수주해 범용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다.

이 때부터 국가기록원은 A사에 유관솔루션업체인 A사를 지원해주라고 주문했다.

향후 중앙행정부처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자기록물의 생성과 처리 규모가 커지는 만큼 해당분야 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장은 “한 개 업체가 아니고 가능하면 한 개 이상의 복수업체가 기술 규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그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사는 개발제품의 설치 매뉴얼과 일부 레이어별 샘플코드를 B사에게 전달하는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시작했다.

이 와중에 국가기록원 직원은 2011년 2월 B사에 A사의 제품 소스코드를 메일로 전달했다.

그로부터 2년 뒤 2013년 B사가 개발한 제품은 B사 제품에 이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의 인증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듬해 두 업체의 제품간 연동테스트 진행 중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A사는 B사가 자신들의 제품을 복제했다는 인지를 하게 됐다.

A사는 자신들이 국가기록원에 납품한 제품이 복제된 사실을, 그것도 국가기록원이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2015년 12월 재판에서 B사 업체 직원의 입을 통해 알게 됐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년 ○월 ○일자 [] 제하의 각 기사에서 B사가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소스코드를 국가 기록원을 통해 취득 및 복제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범용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국가(국가기록원)에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 축탁 결과에 의하면 B사의 제품과 피고의 제품의 유사도는 표준기술 규격 부분을 포함하여도 원본 기준 16.88%, 비교본 기준 7.92%에 불과하여, B사의 프로그램이 A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까지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 기사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5

2018서울조정2408·2409, 2410·2411(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
 기로 합의한 언론사간 조정사례

보도내용

- 종합일간지인 피신청인은 종합편성채널인 신청인 언론사가 2014년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취지로 지면 및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 언론사는 당시 기준점수를 상회하여 적법하게 승인받았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은 해당 심사에서 기준점수를 상회하여 적법한 승인을 받았기에 이를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이전 온라인 기사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별도의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고 온라인상 기사만 수정되어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보도게재 지면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2차에 걸친 심리 끝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12월 1일 <티브이조선><채널에이><제이티비시><엠비엔> 등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출범한 지 7년을 맞는다.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종편이 방송시장에서 안착한 만큼 신규 방송사업자에게 주었던 의무송출제도 등 특혜환수에 나섰다. 지상파 방송과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공정경쟁 구도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편에 부과된 특혜는 의무송출과 황금채널, 미디어랩, 방송발전기금 등이 있다. 우선 종편의 의무송출이 다음달에 폐지될 예정이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종편으로 왜곡된 미디어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선 재승인 심사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종편은 그동안 두번의 재승인 심사가 있었다. 2014년의 첫번째 심사에서 A와 B가 기준점수에 미달했고, 2017년 두번째 심사에서도 A가 기준점수에 미달했으나 조건부로 통과됐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앞으로 재승인 심사를 강화해서 다음엔 점수가 미달인 종편사는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년 ○월 ○일 ○면 [] 기사에서 B종편사가 2014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종편사는 해당 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상회하여 적법한 승인을 받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통상의 정정보도문 활자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섹션 기사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 제목을 24시간 고정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사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6

2018부산조정70, 71(병합) 각 정정청구

지자체의 일방적 행정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1면에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경제신문인 피신청인은 부산광역시가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구, 군의 부담금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비판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 부산광역시는 이에 대해 구, 군의 일부 부담과 관련하여 시 간부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사전협의한 바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구, 군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는 등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했다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부산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비용을 시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고 구·군의 일부 부담과 관련해서 시 간부가 각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협의하였음
- 부산시 최고정책회의에서는 시와 구·군이 동반관계로 권한과 예산, 정보를 나누어 전국 부산형 분권모델을 만들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그 일환으로서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을 합의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은 구는 합의하지 않는 등 자율적인 의사판단에 따라 진행되었음
- 부산시는 최고정책회의의 후속조치로 실무회의를 준비하고 있음

조정결과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사실관계가 틀린 점을 인정하여 지면 1면 및 인터넷 초기화면에 정정보도하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년 ○월 ○일 ○면과 홈페이지에서 ▲오거돈 시장과 부산시는 초·중·고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 구·군 분담금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꼼수 ▲0월 0일 ‘부산시 최고정책회의’의 속내는 구·군 분담금 문제 해결에 초점 ▲민선7기 부산시는 소통을 외치고 있지만, 이면에는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이다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마저 보임 ▲오시장과 부산시는 시민을 위한 참다운 소통과 행정으로 신뢰를 구축해야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부산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비용을 2019년 부산시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고 구·군의 일부 분담과 관련해서는 시 간부가 15개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협의 하였습니다. 또 11월27일 개최한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는 앞으로 시와 구·군이 동반관계로 권한과 예산, 정보를 나누어 전국최고의 부산형 분권모델을 만들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시민을 위한 시정과 구정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으며, 3개 구·군은 자율적인 의사판단에 따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후속조치로 시와 구군에 분권과 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상호 협의와 협력추진을 이행할 것을 알리고 실무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 1면에 보도문을 2단으로 게재한다. 단, 보도문의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도문을 72시간동안 게재한다. 단,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삭제하여 열람 및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여 열람 및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사례 17****2018서울조정2443·2444, 2445·2446(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언론사의 자발적인 정정보도에 대해 조정신청하여 다시 정정보도가 이뤄진 사례****보도내용**

- 종합편성채널사인 피신청인은 공항 협력업체의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이전 보도에 대해 정정하면서, ‘노동조합 간부의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고 보도했으나 당시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졌다’고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간부 부인의 승진이 빨랐던 점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간부 부인의 승진이 빨랐던 점을 인정한 적 없으며, 초고속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직접 피신청인 측에 인정한 바도 없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이전 보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자발적으로 정정하면서, 신청인의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포함시킨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익에 부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정심리 중 중재부에서는 실제 신청인의 의사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정정하도록 권유하였고, 양 측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본 방송은 지난 ○일 []이라는 제목으로 “남편이 ○노조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노조 지부장이 아니라 지회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조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방송은 지난 ○월 ○일자 기사에서 [] 라는 제목으로, “○노조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호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지부는 간부 부인의 승진이 빨랐던 점을 인정한 적이 없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홈페이지의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위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기하여 그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 처음 24시간 동안 위 보도문 제목이 해당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동일하게 기사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